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직인생략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 907호) /전화: 02-761-4203 /팩스*02-782-6659
담당부서 : 대외협력팀 담당부서장 : 송자은 부장 담당자 : 고정은 과장 e-mail: jenko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-5호

시행일자: 2022.1.3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
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:

제 목: 「의약외품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-5730(2021.12.10.)호 관련입니다.
3.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·유효성 심사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,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사용을 위한 용법·용량, 포장단위 등을 개정하고자 「의약외품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 일부 개정 고시안을 [붙임1]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
4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[붙임3]의 양식에 따라 2022년 2월 7일(월)까지 우리협회(이메일: jenko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: 1. 「의약외품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. 1부.
2. 규제영향분석서. 1부.
3. 검토의견서(양식)_의약외품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.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